



종계등록및 검사강화

- 본회, 농장별 카드작성 강력히 실시 -

본회에서는 금년도 종계검사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정관 검사사업의 내용을보면

첫째 : 무허가 부화장, 미등록 종계장의 강력한 고발조치

둘째 : 미등록 종계일소

셋째 : 종계검사 업무의 신속처리 등이다.

또한 종계검사 출장시에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점검하게 되며 특히 종계사육일지가 없는 종계는 불합격시킬 방침이다.

본회는 종계검사 업무를 위해 농장별로 카드를 작성하였으며 보유종계의 일부등록, G. P. S. 농장의 종계 분양보고에서 누락된 종계등록에 대하여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예정이니 종계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이점을 특히 유의하여 주기 바라며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종계검사 기준 -

1. 타품종과 혼사시켜서는 안된다.

2. 계사는 세대별 품종별로 구분사육 해야한다.

3. 암컷에 대한 숫컷의 비율이 케이지의 경우 100분의3, 평사의 경우 100분의 7 이상이어야 한다.

4. 종계사육일지를 필히 비치해야 한다.

5.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정문 및 계사 출입구의 소독조

나. 소독기구

다. 소각장 시설

라. 병계의 격리 사육시설



△ 종계는 타품종과 혼사시켜서는 안된다.

6. G.P.S 농장의 분양보고에서 누락된 종계는 검사신청시 접수하지 않는다.
7. 종란 반출입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8. 위탁사육의 경우 위탁사육자의 명의로 종계 확인서를 발급한다.
9. 종계장 약도와 종계등록 수수료가 첨부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10. 1차 불합격된 종계는 2차 검사시 검사 수수료를 다시 내야한다.
11. 입추전 종계의 일부를 검사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종계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상기 기준에 맞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입추 60일 이내에 본회에 종계검사 신청을 필하여 주기바란다.



종계업 및 부화업 경영자 전체대회 개최예정

- 2월6일 오후 2시 신문회관 대회의실 -

본회에서는 종계업 및 부화업 경영자 전체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지난 해 연말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이 결의되고 이정관 개정안이 농수산부의 승인을 얻음에 따라 1월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종계 및 부화분과 회원 회의에서 충분히 토의되었으며 1월 21일 이사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바 있는 종계 및 부화 분과 위원회 규정 운영 방안을 토의 하게 된다.

이 회의에는 많은 종계업이나 부화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참석하여 좋은 의견이 교환되어 좋은 운영방안이 검토,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전국의 부화장과 종계장에 발송된 회의 공문에 첨부된 종계장 부화장 실태 조사서에 경영자들이 정확히 기재하므로써 앞으로의 부화 및 종계분과운영에 좋은 참고가 되어 업체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 회의 일정 -

1. 일시 : 1980. 2. 6. (수) 오후 2시 (오후

1시 30분 부터접수)

2. 장소 : 신문회관 대회의실(3층)
3. 토의안건 : 가. 종계 및 부화분과 위원회
 규정에 따른 운영방안 토의
 나. 부화분과 위원회 위원개선
 및 조직 강화
 다. 종계분과 위원회 구성
 라. 사업별 특별 위원회 구성
 마. 기타사항

주) 참석하지 않는 경영자께서는 당일회의 결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대리 출석은 허용되지 않음

- 종계 및 부화분과 위원회 규정 -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종 계업 및 부화업을 영위하는 본회 회원이 자율적인 생산조절과 기능강화로 부화 및 종계산업의 안정된 발전을 기하며 권익을 스스로 보호 받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 종계업 및 부화업을 영위하는 본회 회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의무사항)

1. (중계검사) 1) 중계등록을 위한 중계확인검사는 본회가입 회원에 한한다.
2) 신중계 및 부화회원 자격은 농수산부가 정하는 축산법시행규칙에 명시한 사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라야 하며, 회인가입 신청 협회에서 출장조사 후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2. (보고사항) 1) G.P.S 농장은 매월 생산분양되는 중계수수를 자가 입식분을 포함하여 익월 5일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부화장은 매월 생산출하되는 실용계관매수수를 자가 입식분을 포함하여 익월 5일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생산조절) 부화분과 회원은 본회에서 결의한 생산조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가격협정) 초생추 출하 관매가격은 중계 및 부화분과 위원회에서 협정하며, 회원은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회비)

1. 신가입 회비는 일반 회원에 준하며, 지부, 분회 회원이라도 부화, 중계, 회원은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부화, 중계분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2. 부화, 중계분과 위원회비는 부화기 입란 능력 종란 10,000개당 월()원과 중계 보유 1수당 월()원으로 하며, 본회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3. 회비는 부화중이 아니거나 종란이 생산되고 있지 않는 기간에도 납부하여야 하며, 부화기 폐기 또는 중계 도태 후 일정한 보고절차에 의거 확인 후 회비를 감면한다.
4. 부화, 중계분과 회원회비는 부화, 중계분과 위원회의 가결 없이는 저출할 수 없다.

제 5 조 (제명) : 본 규정을 위배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1차 경고를 받고 이에 시정이 없을

경우는 즉시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본회 이사회에 제명을 건의한다.

사전 보고없이 회비를 3개월 미납시는 자동제명하며, 6개월이상 연장할 수 없다.

제 6 조 (규정의 사항) :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중계 및 부화 회원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제 7 조 (시행)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지난 1월 11일 개최된 중계 및 부화 분과회원 회의.

본회 전북지부 정기총회 개최

- 부화분과위원장에 박인수씨, 육계분과 위원장에 문창윤씨 선출

본회 전북지부(지부장: 신홍중)는 지난 1월 24일 오후 전주시내 중앙신용조합 3층 회의실에서 7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70여명의 회원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부화분과위원장에 박인수(동양 부화장 대표)씨와 육계분과 위원장 문창윤씨를 각각 선출했다.

농수산부 본회 정관개정 승인

- 생산조절기능과 분과별 기능 강화 -

농수산부는 지난 79년 정기총회에서 변경 결의한 정관 개정에 대하여 본회가 요청한 사항을 1980. 1. 18. 일자로 수정없이 승인 조치하였다.

본정관 개정의 취지는 첫째 본회가 자율적인 생산조절 기능을 강화 하기로 하고 각 분과별 기능을 대폭강화할 것이며, 둘째 회원들의 회비를 업종별로 구분하므로써 경영규모별로 회비에 공평을 기하며, 셋째 분과별로

자율적인 규정을 채택하므로써 생산조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양계 불황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따라서 각종 생산통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우선을 두자는 것이다. 본회 회원들께서는 정관개정의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 보다 안정된 양계산업을 발전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이 변경된 사항을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조 항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제3장 제5조	회 원 (회원자격 및 구분) 1. 일반회원 : 가금업을 경영하는자, 초생추자응감별사 자격증 소지자	1. 일반회원 가. 부화회원 :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 나. 종계회원 : 종계업을 경영하는자 다. 채란회원 : 채란업을 경영하는자 라. 육계회원 : 육계업을 경영하는자 마. 감별회원 : 초생추자응감별사 자격증 소지자	회원구분을 업종별로 세분화함.
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정관 및 제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업종별 회비를 납부하며 정관 및 업종별 분과위원회 제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업종별로 회비를 구별토록하고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
제4장 제18조	임원 및 직원 (분과위원회) ① 본회의 운영상 다음과 같이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 ① 본회의 운영상 다음과 같이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중계분과위원회를 신설함.

1. 부화분과위원회 : 이십명 이내	1. 부화분과위원회 : 이십명 이내	
2. 채란분과위원회 : 이십명 이내	2. 종계분과위원회 : 이십명 이내	
3. 육계분과위원회 : 이십명 이내	3. 채란분과위원회 : 이십명 이내	
4. 감별분과위원회 : 이십명 이내	4. 육계분과위원회 : 이십명 이내	
	5. 감별분과위원회 : 이십명 이내	
②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 인, 부위원장약간명, 간사 1 인을 두어, 분과위원회에서 선 출한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 인, 부위원장약간명, 간사 1 인을 두며, 분과별 회원회의 서 선출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를 시정함

한협, 박도현사장 삼일문화상 수상

본회 창립 회원이며 부회장을 역임하였
고 현재는 본회 상임고문인 한협가금육종 농장
대표, 박도현사장이 우리나라의 노벨상인
삼일문화상 금년도 근로부분 수상자로 결정
되었다.

박도현 사장께서는 일평생을 오직 양계산
업에 몸바쳤으며 더욱이 국산계 개량을 위한
집념과 헌신적인 노력은 양계인이면 누구나
그 앞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수상은 박도현 사장개인의 영
광은 물론 우리 양계업계의 기쁨이라고 하겠
다. 작년도 KIST의 김
춘수 박사가 기술부분
에서 수상한데 이어 이번
박도현 사장의 수상
은 우리업계의 연이은
경사라 하겠다. 박도현

(한협 박도현 사장)



사장의 수상내용 업적등은 수상일과 때를 맞
주어 (3월 1일) 본지 3월호에 게재할 예정
이다.

본회 제 1 회 이사회 개최

80년도 제 1 회 이사회가 1월21일(월요일)
오후 2시 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오세정 회장
의 주도로 개최되었다.

총17명 이사(12명위임)의 참석으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무국장의 업무현황 . 보
고에 이어 1979년도 수지예산 결산과 종계 및
부화분과 위원회 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79
년도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제명과 신가입회
원 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종계및 부화분과 위원
회 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종계및 부화
업자 확대회의 개최로 시행에 앞선 충분한 주
지와 결의가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양계업계
의 방향이 설정되지않은생산방법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는 농수산부의 강력한 법적
뒷받침으로 생산업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
여와 협조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 강조되었다.